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동향 및 시사점

백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

E-mail : jhpaik@etri.re.kr

요약

WTO의 출현으로 국제 무역환경은 더 이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방파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역상기술장벽(TBT)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각국의 승인제도를 일치 또는 조화시키려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MR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MRA는 향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정보통신기기 MR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APEC 정보통신 MRA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 서

1995년 UR라운드를 통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등장으로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정보통신시장의 경우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화(One World, One Market)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뛰어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간 경쟁력에 따라 좌우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의 극점에 정보통신시장이 놓여 있게 된 것이다.

WTO 체제 이전엔 각국이 자국의 정보통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적합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보호막(강제적인 기술명세인 일종의 승인제도)을 사용하였으나, 국제 무역환경은 더 이상 이런 시장 개방의 방파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역상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협정을 체결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각국의 승인제도를 일치 또는 조화시키려는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MRA란 국가간 무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정된 외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상호인정하여 무역

상 거래 비용을 줄이자는 제도이다.

EU에서는 유럽 단일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미 1986년부터 MRA 작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어느 정도 완비된 상태이고, 미국은 1997년을 시점으로 EU와 캐나다를 시작으로 MRA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APEC 정보통신 MRA는 1999년 7월부터 발효되어 시행 중이며, 2005년까지는 아·태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MRA, 특히 APEC 정보통신 MRA는 향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MR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APEC 정보통신 MRA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상호인정협정(MRA)의 개요

1. MRA 협정의 의의

상호인정협정(MRA)이란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국가가 독자적으로 수행해 오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를 국가간 협정을 맺어 양국이 상호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인정협정은 제품의 시험 및 인증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간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시험 및 인증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즉, 상호인정협정 시행전에는 수입국에서 시험 및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였지만, 상호인정협정을 시행함으로써 수출국에서 받은 시험과 인증을 수입국에서 인정해 줌으로써 수출입에 따른 여러 가지 마찰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 MRA 협정의 진행 단계

상호인정협정의 최종 목표는 세계적인 통일안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각국의 상황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특히 특정 대상 제품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각국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공통 기술기준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상호인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다음 < 표 1 >은 이런 상호인정협정의 진행 단계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 표 1 > MRA의 진행 단계

단계	개요	내용
1	시험성적서 상호인정단계	· 수출국 내에 수입국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수입국이 인정 · 한·카, 미·EU, APEC I 단계 MRA
2	인증서의 상호인정단계	· 수출국 내에 수입국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인정 · APEC II 단계 MRA
3	인증서 및 인증마크 상호인정	· 수출국 내에서 수출국의 기술기준과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된 제품을 수입국 내 판매 인정 · 호주·EU, 뉴질랜드·EU MRA
4	기술규정 통일, 인증절차, 마크 통합	· 한 국가에서 인증되면 양국 어느 곳에서도 판매 가능 · EU 연합 내, 호주·뉴질랜드

III. 상호인정협정(MRA)의 체결 동향

1. 외국 국가간의 MRA 협정 체결 현황

외국 국가간에 지금까지 체결된 MRA로는 EU회원국간의 MRA를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체결된 미·EU, EU·캐나다, EU·호주, EU·뉴질랜드 등이 있다.

MRA는 대부분의 경우 적합성 평가기관의 충족요건, 지정 및 인정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각 MRA별로 세부내용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외국 국가간에 체결된 MRA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 표 2 >와 같다.

< 표 2 > 외국(EU와 타국)간 MRA 체결

국가	대상분야	상호인정범위
미국- EU	통신단말기, 저자기정합성(EMC), 전기용품(안전), 레크레이션용 소형선박, 의약품, 생산관리, 의료기기	시험성적서만 상호인정. 인증서는 품목별로 유예기간을 둠
미국- 캐나다	통신단말기, EMC, 전기용품(안전), 일치회를 포함한 3단계 MRA	양국 기술기준 일치회를 포함한 3단계 MRA
호주- 뉴질랜드	통신단말기, 의약품, 의료기기, 전기용품, EMC, 기계(안전), 압력기기, 자동차부품등	시험성적서, 인증서, 마크 등 모든 적합성 평가결과
일본- 싱가폴	APEC TEL 협정문 내용을 준용치 않은 단독 MRA 일·싱 경제파트너쉽 협정에 포함	시험성적서, 인증서,

2. 한국과 외국간의 MRA 협정 체결 현황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MRA는 캐나다이며, 이후 관련 적합성 평가기관의 경험축적과 기타 국가들과의 MRA 추진을 위한 시급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한국과 외국과의 정보통신기기 분야에 대한 MRA의 논의는 1998년 APEC TEL MRA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APEC TEL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산업분야별 MRA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APEC TEL 차원에서의 논의가 MRA의 실질적 체결을 위한 분야별 협상

에 중점을 둔 반면, 최근의 FTA에서 논의되는 MRA는, MRA의 대상 및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우선 FTA 내에서 MRA 추진 원칙 및 방식을 개괄적으로 합의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추진은 APEC TEL의 MRA를 준용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다음 < 표 3 >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MRA 협정 체결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 표 3 > 한국과 외국간의 MRA 체결

국가	주요 내용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과의 최초의 MRA · 1998년 7월부터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 · 1998년 6월 APEC MRA로 대체하기로 합의 · 2000년 3월 서신교환 형식으로 전환 합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미국측 제안으로 양국 MRA 논의 시작 · 2004년 한-미 MRA 실무협상 시작 · 2005년 한-미 MRA 1단계(유무선통신 기기분야) 체결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12월 한-싱 FTA 협상 시작 · 2004년 10월 한-싱 FTA 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MRA는 APECTEL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 · 2005년 9월 싱가폴, 한국 지정시험기관 방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3월 AGENDA 21에서 MRA 추진 합의 · 통신기기의 경우는 APEC MRA로 대체하기로 합의 · 2004년 한-일 FTA 협상에서 논의 시작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합의 · 2000년 5월 통신기기 MRA를 포함하기로 합의 · 2003년 4월 한-칠레 FTA에 포함함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5월 한국이 MRA 협상의 제의 · 1997년 10월 MRA와 관한 사전 준비로 설명회 개최

IV. APEC 정보통신 상호인정 협정(MRA)

1. APEC MRA의 개요 및 성격

1989년 11월 6일에 창설된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1998년 6월 2일-5일, 싱가포르)에서 정보통신기

기 MRA 기본안을 승인하였다. 정보통신분야 APEC MRA는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최초의 다자간 MRA이다.

APEC MRA는 회원국간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이다. 즉, 정보통신기기 MRA의 이행 여부는 MRA를 채택한 회원국의 의사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APEC 회원국 장관명의의 MRA 실행선언문은 약속의 형태로 구속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회원국간에 서로 원활 경우에는 합의하에 서신교환(exchange of letters) 등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의 MRA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2. 최근 동향

1998년 각료선언 당시 APEC의 18개 회원국 중 칠레를 제외한 17개 회원국이 참여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를 중 총 8개국이 1999년 7월부터 I 단계 또는 II 단계 참여의사를 표명하였고, 기타 멕시코(2001년), 중국(2002년), 태국(2004년)은 2001-2005년 기간 중 I 단계 시행을 계획하였다. 통신장비 MRA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1998년 7월 각국은 지시적 계획표를 제출하였다.

이하에서는 APEC MRA와 관련한 최근 동향 추이를 < 표 4 >에서 정리하였다.

< 표 4 > APEC MRA 최근동향

일시	주요 내용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미국, 캐나다 등이 I 단계 실행을 위한 지정시험기관 및 기술 규정의 관련사항 발표 · II 단계 실행에 대한 참여시기 및 관련사항에 대해 논의 ·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4개국이 2000년 말까지 II 단계 시행 표명, 한국은 II 단계 참여시기에 대해 유보 · 각국의 시험기관 지정, 인증 및 기술규정 등에 대한 DB 구축 추진에 동의, MRA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DB 구축에 합의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MRA Information Guide를 확정하여 MRA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정보의 관리 및 교환에 관한 원칙에 합의 · APEC MRA Information Guide는 정보교환 및 관리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책임과 권한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APEC MRA의 실행을 위한 모든 정보를 사실상 총망라함

일시	주요 내용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I 단계 MRA 개시 시기를 2003년 10월, 베트남은 2003년 1/4분기 중 이행 표명 · 호주는 I 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2002년 11월에 미국과 서신교환을 완료하여 양국간 CAB(Conformity Assessment Body; 적합성 평가기관) 승인을 추진중에 있음을 표명 · 대만은 2002년도에 전년대비 2배 정도의 시험기관을 지정하였으며 2002년 이후 전기통신단말기기에 대한 인증 업무를 민간에 위임하고 있다고 보고 · 적합성 평가절차인 SDoc에 대한 논의, 향후 자유화그룹의 규제와 관련된 논의시 포함하여 워크샵을 추진할 것 이 제안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기분야의 시험 및 인증 MRA 이외 각국의 기술규정의 선택적 상호인정을 위한 NEW MRA에 대한 검토着手 · 제조자의 적합성 평가절차인 SDoc제도를 APEC 국가들의 채택하여야할 모범적 규제가이드라인으로 제안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MRA를 위한 연구로, APEC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6개 IT 제품의 규격의 동등성 비교 프로젝트 결과 발표 · APEC TEL MRA 2단계 5개국가들의 이행사례 발표(예정)

V. 결론- APEC MRA의 대응전략

APEC MRA는 미국의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어왔는데, 이는 미국의 정보통신기기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미국시장은 비강제적 민간 임의표준의 준수가 실제 시장진출에 필수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에는 400여개의 표준을 설정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으며, 특히, 통신기기부문의 UL인증 등은 법적 의무는 없으나 미국 소비자의 신뢰획득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외국의 수출업자는 MRA에 관계없이 미국 민간부문의 기술장벽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시장은 강제분야의 MRA만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표준이 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MRA의 실익이 적게 된다.

APEC 정보통신기기 MRA는 적어도 2005년까지는 아·태 전지역을 포함하여 시행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각국 시험·인증제도의 발전 및 국제기준의 채택, 시험·인증시장의 개방이

예상되며, 역내 기술규격의 조화가 모색될 전망이다.

기술규격 및 표준의 조화는 궁극적으로 기술장벽 발생의 소지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NAFTA 및 캐나다·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서로간의 표준관련 제도 조화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을 FTA 조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인증관련 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MRA는 물론, 보다 선진적인 형태인 SDoc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증제도의 개선은 동아시아 각국과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APEC MRA의 경험은 EU등 여타 지역과의 MRA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U는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MRA를 체결한 바 있는데,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역내 통일 규격인 CE 마크의 부착만으로 전 EU회원국시장에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EU와 MRA를 체결할 경우 유럽지역에의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기 무역 흑자국으로, MRA를 통해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시장에서 요구되는 민간 임의표준 획득 소요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UL과 같은 해외 인증기관의 국내 시험을 활성화시켜 현지시장에서의 민간표준 획득이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시험·인증 시장을 외국에 내주는 단점이 있지만 MRA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기술장벽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내 정보통신기기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합성 평가 비용은 각 품목의 모델별로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 품목이 많을수록 MRA로 인한 직접적 비용의 감소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상기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II단계 MRA에의 참여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II단계

MRA에는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 개도국이 참여하지 않는 반면, 민간 임의표준의 중요성이 큰 미국 및 우리나라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1] APEC TEL(1998)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 [2] 김희동 · 김명진 (1998). “기술장벽협정과 형식승인 상호 인정협정의 국제동향”. 「국제 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2).
- [3] 박종훈 외 (2000). 「정보통신분야 MRA 협상전략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4] 장윤일 (2000). 「북미 · 유럽지역의 통신기기 인증제도 연구」. 전파연구소.
- [5] 최계영 외 (2002).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상호인증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관련 국제협력(MRA)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편(2004),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 및 MRA 연구